

한강사업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『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』 개정에 따라 한강사업본부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림.

■ 조례개정 내역

- 개정조항 : 「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(신설)
- 신설내용 :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·예결위에 보고
- 시행시기 : 2016. 3. 24. 공포일부터 시행

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③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〈신설 2016.3.24〉

■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총 1건

부서	지출액	승인일자	지출 사유
운영총괄과	250,000천원	2016.2.1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작대교 전망카페 건물 명도소송 결과 (강제조정)에 따라 판결금 지급 - 강제조정 결정사항 ▶ 피고는 원고(서울시)로부터 250백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한다